##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25 발의연월일 : 2025. 4. 10.

발 의 자:전진숙·박희승·서미화

김선민 • 이수진 • 백혜련

임호선 · 김 윤 · 남인순

임광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,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,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·축산물·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.

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안전
	관리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
	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
	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
	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
	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
	하여야 한다.